

<p>로서 해당공사 또는 공단의설치조례에 서울특별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무상으로 대부→삭제</p> <p>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양재대)</p> <p>○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사에 대한 체비지 무상대부 허용” 규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요구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p> <p>○체비지에 대하여</p> <p>-당초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수익, 대부 등 사업시행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지방공사에 대한 체비지의 무상대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으나(1차회신)</p> <p>-재결의시 체비지는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을 배제하고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취지에 맞지 않으나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6조)에서 체비지 “관리”의 지방재정법 배제 명문규정이 없어 지방재정법의 배제가 어려우므로 지방재정법 규정도 따라야 한다고 해석했고(2차회신)</p> <p>-행정자치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비지가 공유재산이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사는 무상대부 허용기관이 아니므로 동조제2조의2 규정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위배되므로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p> <p>○양기관 간의 견해차이에 따라 일시 법령해석에 혼란을 초래한 게 사실이긴 하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토록 한 취지에서 보면 자치입법권의 제정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조항의 개정은 차치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항의 삭제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됨.</p> <p>4. 질의 및 답변요지</p>	<p>○생략</p> <p>5. 토론요지</p> <p>○생략</p> <p>6. 소위원회 심사내용</p> <p>○소위원회 구성 없음.</p> <p>7. 심사결과</p> <p>○원안가결(만장일치)</p> <p>8. 기타 필요한 사항</p> <p>○없음.</p> <hr/> <p>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의2를 삭제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hr/> <p>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안에 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안 제7조제2항 중 “20인”을 “22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중 “의원”을 “의원 3인”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종사자”를 “종사자 각 1인”으로 한다.</p> <p>부칙 제1조 중 “1999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p> <p>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장애인·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이라 함은 6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라 함은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

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애인·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장애인·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노인·장애인·청소년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노인·장애인·청소년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4. 노인·장애인·청소년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노인·장애인·청소년 관련단체 및 시설 종사자 교육
6. 저소득 노인·장애인·청소년 자활지원
7. 기타 시장이 노인·장애인·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청소년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하여 각 계정간에 차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이 되

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행정관리국장, 시정기획관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인 및 노인·장애인·청소년복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노인·장애인·청소년 관련 단체·법인 등의 종사자 각 1인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장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노인복지·장애인복지·청소년복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p>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영관: 보건복지국장 2. 분입기금운영관: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청소년과장 3. 기금출납원: 분입기금운영관이 지정하는 사무관 <p>②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영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p> <p>제13조(기금운영계획 등)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p> <p>제 3 조(노인복지기금등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 및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p> <p>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 및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설치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p> <p style="text-align: right;">1998년 12월 문교보사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사경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8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1998년 12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7차 문교보사위원회('98.12.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문화관광국장 김우석) <p>우리 시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p> 3. 주요골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원회의 기능: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자문(안 제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객 맞이 준비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 위촉위원을 위원의 과반으로 구성(안 제3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공무원 -기타 관광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2) 간사: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p>다. 위원의 임기: 2년 연임가능(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p> 4. 참고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나. 예산조치: '99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400만원) 다. 합 의: 필요 없음. 5. 검토보고(전문위원 윤병국)
--	--